



농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233호

**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3. 11. 15.

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3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15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기술보급과장

1. 제안이유

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예찰방제단 조정(안 제4조제3항)

- 예찰방제단 3개반 → 2개반, 각반 10명 내외 구성
- 예찰방제반, 방제지원반, 행정지원반 → 예찰방제반, 행정지원반

나. 예찰방제반 임무 추가(안 제6조제1항제7호)

- 종합방제상황실 운영, 방제상황 보고, 방제교육, 홍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10155호(2023.9.20.)]
- 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[복지정책과-29904호(2023.10.04.)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10876호(2023.9.14.)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9. 19. ~ 2023. 10. 12. (23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기술보급과 (☎ 041-635-6166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개반”을 “2개반”으로, “이내”를 “내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“적기방제 및 방제대상자 확정, 손실보상 등 업무수행”을 “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찰·방제반”을 “예찰방제반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7. 종합방제상황실 운영, 방제상황 보고, 방제교육, 홍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기 술 보 급 과 장	전 일 름
	식 량 작 물 팀 장	이 영 수 (041-746-8371)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반을 두며, 각 반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1. <u>예찰방제반</u>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반원 : <u>정밀예찰, 적기방제 및 방제대상자 확정, 손실보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</u></p> <p>2. <u>방제지원반</u></p> <p>가. 반장 : <u>지도정책과장</u></p> <p>나. 반원 : <u>종합방제상황실 운영, 방제 상황보고, 방제교육, 홍보 등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지도사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6조(임무) ① <u>예찰·방제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 <u>2개반</u>----- -- <u>내외</u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<u>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</u>----- ----- -----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임무) ① <u>예찰방제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종합방제상황실 운영, 방제상황 보고, 방제교육, 홍보</u></p>

② 방제지원반은 종합방제상황
실운영, 방제상황보고, 방제교
육, 홍보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

③ (생 략)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해당없음

나. 추계결과

해당없음

3. 작성자

기술보급과장 전 일 름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식물방역법」

제31조의4(병해충예찰·방제대책본부 등)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,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 및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·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병해충(「산림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)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두며, 시·군·자치구에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둔다.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은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은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1. 14.>

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·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과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